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161

발의연월일: 2022. 12. 27.

발 의 자: 김용민·김남국·김승원

민형배 • 서동용 • 안민석

윤영덕 • 이동주 • 최강욱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,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모임의 개최,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·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자유,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(헌재 2022. 7. 21. 2018헌바164).

이에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, 정치적 표현의 자유,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10 3조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3조제3항 중 "동창회·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"을 "야유회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03條(各種集會 등의 제한) ①	第103條(各種集會 등의 제한) ①
·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	③
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	
향우회·종친회· <u>동창회·단합대회</u>	
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	
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